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92
----------	------

제출년월일 : 2016년 4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이 「소방기본법」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상위법과의 일관성 유지 및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에 맞게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의용소방대 설치, 전문의용소방대 자격조건 구체화(안 제1장)

(설치)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또는 혼성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문의용소방대를 추가 설치함.

(전문의용소방대 자격) 새로 설치되는 전문의용소방대의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의용소방대원의 임명·해임, 조직, 정원 등을 명확히 함(안 제2장)

(임명)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며, 모집인원에 부족할 때 추천에 의하여 임명

가능함.

(해임) 대원 해임 시 해임통지서 통보, 사직 시 사직서 제출 의무

(조직) 조직과 직위 내용과 고문 위촉 가능성 정함

(임기) 지역대장·전문대장 ⇨ 3년 임기,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임명

(정원)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또는 혼성의용소방대 -
각 40명, 지역의용소방대·전문의용소방대 - 각 20명

(신분증명서 발급) 대장·부대장 ⇨ 시장이 발급,

지역대장 이하 : 소방서장 발급 ※재발급 시 신청서 제출

(개인정보) :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받음

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구성·심의안건·심의절차 등을 규정
(안 제3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5~9명의 인원으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
대원, 소방업무 경험자로 구성하며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촉

(심의대상) 성과중심 보상 심의, 고문위촉, 지역대장·전문대장
추천,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회의 운영 등) 심의대상 의용소방대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
기회 제공,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참
석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마. 의용소방대원 복무와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기준 제시(안 제4장)

(복무지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연2회 복무지도

(교육 및 훈련) 법과 규칙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
훈련기록부에 기록 관리하며, 예산범위 내 여비 지급

- 바.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재해보상, 장학금의 지원 등을 정함 (안 제5장)
 - (소집수당) 임무 수행 시 지급, 월간단위 계산 분단위 이하 제외
 - (성과중심의 보상) 활동실적 반영한 성과중심 보상, 공적에 의한 포상, 대원의 사기진작 등
 - (재해보상) 재해보상의 종류, 청구 및 지급절차, 지급방법, 지급순위
 -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 지급의 자격, 인원, 금액 기준 및 지급정지 사유
 - (경비부담) 소방활동 지원, 장비와 물품 구입, 소방기술경연대회, 소방홍보, 교육·훈련, 장학금, 재해보상금
- 사.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임무, 경비지원 등(안 제6장)
 - (구성·임무) 의용소방대 정보교환과 지역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연합회를 구성하며, 협력과 소방업무 지원의 임무 부여
 - (경비지원) 시장은 연합회 활동경비 지원 할 수 있음
- 아. 관할구역 내의 업무지원 및 권한위임 사항을 규정함(안 제7장)
 - (관할구역 내의 업무지원) 의용소방대 지원 요청 시 소방서장은 적극 참여 및 지원
 - (권한위임) 시장은 권한의 일부를 의용소방대 운영상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합 의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협의완료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일부 의견반영

관련 조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제11조①항, 16조 ③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으로 반영• 16조 ③항에 의한 직무교육 규정 삭제로 미반영• 체력검진과 체력향상 지원은 별도의 예산조치 문제와 민간인 규제사항으로 미반영	• 여성 정책담당관 의견 일부 반영

-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16. 2. 11. ~ 3. 2.) 결과: 별첨
- (2) 비용추계 등 자료: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남성의 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또는 혼성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총리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전문대를 구성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중장비·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총리령 제4조제1항의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시장 또는 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

여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시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인원은 의용소방대의 정원, 결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임명한다.

③ 시장 또는 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하는 사람
이 없거나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이
나 의용소방대원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을 받은 사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
영위원회”라 한다)는 총리령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
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출
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
여 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
을 문서로 시장 또는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는 대장· 부대
장· 부장· 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다만 지역대 및 전문대에는 부대
장을 두지 아니한다.

② 시장 또는 서장은 지역사회 소방안전과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주민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대장 등의 임기) ①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지역대장, 전문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정원)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또는 혼성의용소방대 : 각 40명 이내

2. 지역대·전문대 : 각 20명 이내

제9조(신분증명서) 총리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는 대장 및 부대장은 시장이 발급하며, 지역대장·전문대장 및 의용소방대원은 시장이 발급하고, 재발급의 경우도 같다.

제10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총리령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용소방대를 감독·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부서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제12조(심의대상) 총리령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의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6조 의용소방대의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3. 제7조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제4조의 의용소방대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회의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 또는 서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복무와 교육훈련

제14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①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서장은 연 2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본부장 또는 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및 훈련) ① 본부장 또는 서장은 총리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의용소방대 교육·훈련기록부에 개인별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의용소방대 대장 및 부대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별도의 의무 교육·훈련 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제16조(소집수당) ①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 및 총리령 제19조에 의한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출동(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하되, 합산시간의 분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제17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시장 또는 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외 견학, 소방기술경연대회 또는 체육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재해보상) ① 법 제17조 및 총리령 제21조에 따른 재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용소방대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② 시장 또는 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는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제19조(장학금 지원) ① 시장은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지급인원: 자녀 1명
3. 지급금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장학금 지급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대원이 법 제4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2. 대원의 자녀가 퇴학·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한 경우

제21조(경비부담) 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6. 재해보상을 위한 재해보상금

7. 그 밖의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6장 의용소방대 연합회 등

제22조(의용소방대연합회) 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소방재난업무 정보교환,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과 친목도모 등 지역 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제23조(연합회의 임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간의 친목 도모
2. 의용소방대간의 협력 강화
3. 지역행정(소방 및 일반) 협조 지원

제24조(연합회의 경비지원) ① 시장은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합회가 시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원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5조(관할 구역 내의 업무지원) 소방서장은 관할 구역 내의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활동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위임) 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및 연합회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연합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연합회 임원과 대장 등의 직위와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잔여 임기까지 보장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의용소방대 중 제8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제8조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의용소방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제5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윤여일	○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의용소방대를 남성의용소방대 여성 의용소방대에 한정하지 않고 혼성 의용소방대까지 설치 할 수 있는 근거 명시	○ 반영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170호, 2015.6.9.)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1항에 의한 혼성의용소방대 설치를 제한하지 않음
하충식	○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⑤항 대장이 대원의 직위변경 → 소방서장이 승인 ↳ 대원의 직위변경은 소방서장의 고유 권한	○ 반영 - 소방서장에게 부장 이하 대원의 임용권한 명시
이기수	○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어 추천을 할 경우 피추천인의 사전동의 규정 삭제	○ 미반영 - 피추천인이 입대원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사전동의로 간주
박옥재 조민정	○ 제6조(조직) 부장의 직책을 지역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에는 두지 아니함.	○ 미반영 - 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조직체계를 별도 규정함
박옥재	○ 제7조(대장, 부대장의 임기) 대장, 부대장의 임기 만료 시 의용소방대원의 신분도 동시에 상실하게 하며, 대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 필요	○ 미반영 - 대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면직처분 할 때에는 대장의 직에 대하여만 면직하는 것으로 소방서장이 새로이 직책을 부여하여 보직발령하거나 대원의 직위를 면직처분할 수 있음
하충식	○ 제7조(대장, 부대장의 임기) 부장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규정	○ 미반영 - 부장의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임명권자가 상황에 따라 임용토록 하는 것이며, 계속적으로 직을 유지하라는 의미가 아님.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당해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추가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비용이 추가로 증가하는 개정안이 아니므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비용추계서 첨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당해 개정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지출의 순증가는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소방재난본부 대응총괄팀장 이 창 식